KOSHA GUIDE

C - 87 - 2013

- (6) 굴착면의 높이 2m 이상 작업, 맨홀작업, 1톤 이상의 크레인작업 등은 유해·위험공종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.
- (7) 안전작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필요 장소에 안전 표지판, 경고등,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8) 전기 기계·기구의 누전여부, 접지선의 접속 확인, 케이블의 손상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, 와이어로프의 이상유무 확인 등 달기구를 사용하기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9) 굴착장소의 장해물, 굴착잔토 적치장, 작업구역 내 가설기자재 등의 임시 적치상태, 산소결핍과 유해가스의 위험이 있는 장소, 지반의 상태 등 굴착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그 밖의 사항은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(KOSH GUIDE C-39-2011),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(KOSHA GUIDE C-37-2011), 흙막이공사 (지하연속벽) 안전보건작업 지침(KOSHA GUIDE C-72-2012)에 따른다.

7. 각 공정별 안전보건작업 기준

7.1 지하 매설물 조사

- (1) 인력 등으로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 매설물(상·하수도관, 도시가스관, 전력구, 송유관 등)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위치표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가스관 등 화재·폭발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.

7.2 흄관 등 중량자재 반입

(1) 흄관 등 중량자재의 하역, 운반 시에는 반드시 2줄걸이를 실시하고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